

排出 賦課金 制度

鄭 國 鉉

〈環境廳 振興協力課長〉

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배출부과금 제도의 실시배경, 부과대상 오염물질, 부과금 산정 방법 및 기준, 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.

앞으로 몇 회에 걸쳐 부과금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질의 회신내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염물질별 부과금 산정을 예시한 후 끝을 맺고자 한다.

【문】 환경오염도 검사(단속)를 실시할 때 배출업소에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에 초과함을 미리 알고 임의로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여 시·도에서 개선명령을 명하기 전에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부과금 징수 조치 및 행정조치 사항으로 개선명령을 명하는 즉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완료 신고를 하면서 개선완료 되었음을 주장할 시 부과금 산정일수 및 이러한 개선완료 신고를 적합한 신고로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여부?

【답】 환경보전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즉시 개선명령일과 동일한 날에 동법 시행령 제 17 조의 12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배출부과금 산정일수는 없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, 다만 사업자가 개선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일과 개선계획서 제출일 간에 며칠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배출부과금 산정일수로 계산하여야 됨.

【문】 위와 같은 경우 시험성적서(폐수항목의 경우)가 발부되려면 검사소요일 7 일과 공문발송 등 행정전처에 3 일이 소요됨을 가정하면 최소한 10 일 정도는 부과금 산정에서 제외(현행법

및 사무처리 규정)되도록 되어 있으나, 사실 이 기간은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고 있으므로 부과금 산정에 포함시킴이 옳다고 보여지며 “위”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산일을 채수일로 개정할 수 없는지 여부?

【답】 환경보전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“사업자가 동법 제 17 조 또는 동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 동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경우”에 배출부과금 납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오염물질 채취 및 오염도 검사기간 동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은 할 수 없으며, 기산일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추후 환경보전법 개정시 참고할 것임.

【문】 현행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배출허용 기준을 300 %와 400 %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업소는 부과계수란에 “조업정지”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역내의 여러가지 여건(고용, 생산등 2 차문제를 고려)상 조업정지를 유보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?

【답】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 조의 8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의 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가 300 %이상 또는 400 %가 되어 조업정지시킬 경우 국가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특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으나,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생산등 2 차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유보하여서는 아니됨.

〈다음호에 계속〉